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 (찬성자 39명)

나. 의안번호 : 제 1680 호

다. 발의일자 : 2024. 4. 2.

라. 회부일자 : 2024. 4. 8.

2. 제안이유

- 도로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등)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도로시설물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고 그 외 도로시설물의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은 도로사업소장으로 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4. 12. ~ 04. 16.)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한편,
- 차도 및 보도의 청소 범위에 지하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 안전 관리 실장	도로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 사업 소장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 사업 소장
	○보도관리(촉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차도 및 보도 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자치 구청장		○보도관리(촉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차도 및 보도(지하보도 포함) 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자치 구청장
도로 부속물	나머지 도로 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신 설>	재난 안전 관리 실장	도로 부속물	나머지 도로 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 사업 소장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 사업 소장

	자·도로 옹벽·방음 벽·맨홀 등)	(생략)	
		(생략)	
교통 안전 관련	시선유도 표지·시 선유도봉 ·갈매기 표지·도 로반사경 ·차량진 입금지시 설 및 무단횡단 금지 시설, 교통섬 등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 무총괄	재난 안전 관리 실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신 설>	재난 안전 관리 실장
도로 부속물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 사업 소장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 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생략)	
		(생략)	

■ 서울시 도로시설물 현황

- 도로시설물¹⁾은 도로에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고가차도·입체차도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내 설치된 도로시설물은 총 11종 1,204개소이며 총연장은 470.8km임([표] 참조).

[표] 2024년 도로시설물 현황 (2024. 2월 기준)

구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합 계	합계	1,204	22	516	94	44	47	167	80	146	74	8	6
	연장	470,882	56,521	65,899	84,917	12,087	25,049	54,828	4,778	7,340	83,100	74,770	1,593
	1종	121	22	28	23	5	17	6			20		
	2종	228		63	28	17	21	62			29	8	

-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3종	573		234	37	20	4	81	54	124	13		6
	법정 외	282		191	6	2	5	18	26	22	12		
	합계	605	22	238	83	44	36	118			50	8	6
	연장	409,855	56,521	55,744	81,820	12,087	23,298	47,416			56,606	74,770	1,593
시	1종	117	22	28	22	5	17	6			17		
	2종	200		57	24	17	19	53			22	8	
	3종	257		138	31	20		51			11		6
	법정 외	31		15	6	2		8					
	합계	599		278	11		11	49	80	146	24		
자치구	연장	61,027		10,155	3,097		1,751	7,412	4,778	7,340	26,494		
	1종	4			1						3		
	2종	28		6	4		2	9			7		
	3종	316		96	6		4	30	54	124	2		
	법정 외	251		176			5	10	26	22	12		

○ 시는 시설물의 규모 및 연식에 따른 안전점검 시기 선정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2)에 따라 1종, 2종, 3종 및 법정외 시설물로 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3)에 근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 도로시설물을 포함한 도로, 도로부속물 등의 총괄관리자를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지정4)하고 제5조5)에 따라 시설물의 유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재난안전관리실장 : 도로, 공동구,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

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도 내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22개소를 비롯하여 1종 시설물 중 일반교량 28개소, 고가차도 23개소, 입체교차 5개소는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도로시설물 527개소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6개 도로사업소⁶⁾ 및 서울시설공단 등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여기서,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경우 해당 도로시설물의 관리기관과는 별개로 유지관리 기관을 도로사업소로 일괄하여 지정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임([표] 참조).

[표] 현행 도로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부속물 관리 현황 ([별표 1] 중 발췌)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시설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미끄럼방지시설·낙석방지망·도로사면·도로옹벽·방음벽·맨홀 등)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 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교통섬·표지병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6)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은 시설물의 도로포장 정비나 공사로 인해 제거된 후 재설치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사실상 도로시설물을 점검하면서 부속물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가 현행 [별표 1]과 같이 도로사업소장보다는 재난안전관리실장이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임.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본 개정안은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을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실의 업무 범위에 그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 이는 현장에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해 해당 시설물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포함)을 하나의 관리자가 일괄하여 통일성 있게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현실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을 제고한다 하겠음.
- 한편, 별표 1의 시장으로부터 자치구청장이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도 내 ‘차도 및 보도의 청소’ 중 보도에 ‘지하보도’를 포함토록 하려는 것은 위임된 사무의 업무 범

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